



#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5. 6.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 추진배경 .....	1
II.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	2
III. 법정부 차원의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	4
IV. '15년도 반부패·청렴대책 .....	6
1. 목표 및 전략 .....	6
2. 중점 추진과제 .....	8
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8
나.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12
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정책 투명성 제고 .....	13
라.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15
V.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16
※ 참고	
[1] 방통위 행동강령 개정안 .....	17
[2] 주요일정 .....	18

- ◆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15.2.24)
- ◆ 우리 위원회 정책환경과 업무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구현

- 금년도는 현 정부 출범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
  - 특히, 경제활성화 및 국가개혁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긴요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심화
  -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의 현격한 인식 격차
    - \*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의 69.4%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직자는 5.3%에 불과(국민권익위원회 '14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정책 추진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정책의 성공여부와 직결
  -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성공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정책환경과 업무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 실천대책 수립
  - '14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선 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가능성 중심의 대책 수립·추진

- ◆ '14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1등급(최상위기관)” 달성
  -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 ('13년) 5등급 → ('14년) 1등급
- ◆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 도약
  - 청렴도 측정결과 : ('13년) 3등급 → ('14년) 2등급

## 1 부패방지 시책평가

- '14년도 반부패시책 평가 결과

구 분	종합 평가	평가부문별 결과						
		반부패 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청렴도 개선	부패공직자 발생
중앙행정기관 평균	78.2	81.0	78.8	72.8	72.7	92.3	73.4	90.4
'13 방통위	58.4 (5등급)	55.7	64.9	40.4	37.4	60	50.2	100
'14 방통위	89.9 (1등급)	87.7	86.7	67.1	76.5	95	90.7	100
차이*	11.7	6.7	7.9	△5.7	3.8	2.7	17.3	9.6

### < 분석 >

- (종합) '14년도 반부패시책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89.9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보다 11.7점이 높으며, 규모가 비슷한 중앙행정 기관(7개 기관)에서 최상위 1등급 기관으로 상승
  - 다만,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문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높았으나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개선실적과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실적이 저조한 것이 주요한 원인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부문의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실적에서 평균보다 5.7점이 낮은 평가
  - 주요한 원인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개선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제출된 부패영향평가 내용 및 개선실적이 저조하여,
  - 향후 부패사례, 관련 통계현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중앙행정기관 평균보다 3.8점이 높으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부문 평가에서는,
  - 도입 실적이 전체 수범사례의 30% 수준으로 적극적인 수범사례 수용이 미흡하여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 개선방안 >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을 위해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와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기한 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며,
  - 부패영향 평가 시 관련 통계현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의견을 도출하는 등 평가서 작성의 충실도를 개선
- 권익위의 반부패 수범사례중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차단 방지 등 주요 수범사례를 우선 도입하고,
  - 기관 특성상 도입이 가능한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도입함으로써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에 기여

## 2 기관 청렴도 평가

### o '14년도 연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대 상 기관수	종합청렴도 (청렴도 수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4년도	23개	7.91(2등급)	8.19(2등급)	8.07(3등급)	6.52(3등급)
'13년도	14개	7.67(3등급)	7.52(4등급)	8.25(3등급)	7.27(3등급)
차 이		△0.24	△0.67	▽0.18	▽0.75

### < 분석 >

- o (종합) '14년도에 기관규모(정원)를 고려한 분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Ⅱ 유형으로, 청렴도 측정결과 7.97점을 획득(2등급)하여 2등급으로 상승  
※ '13년도와 비교해보면 종합청렴도가 7.67점에서 0.24점이 상승하였음
- o (외부청렴도) 방통위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청렴도는 8.19점으로 '13년도보다 0.67점이 상승하였음
- o (내부청렴도) 내부 직원 평가는 8.07점으로 '13년도 대비 0.18점이 하락하였으나, 평균 7.95점 보다 높은 수준임
- o (정책고객평가) 학계,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산하기관 및 협회 등의 관계자가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는 6.52점으로 '13년도 대비 0.75점이 하락하였으나 평균 6.76점 보다 높은 수준임

### < 개선방안 >

- o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반부패 • 청렴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개선 및 기관의 청렴활동 인식 제고
- o 관련 실·국 및 운영지원과에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방통위 반부패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

## 대통령 말씀

-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14.12.9, 국무회의)
-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개선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 부패취약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렴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동력 동기 제공

## 1

## 목표 및 전략

비전  
목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구현

-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최우수 기관' 목표 -

실

천

전

략

#### 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도
-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 문화 확산

#### ②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및 점검 강화
-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정책 투명성 제고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 ④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투명성 제고

- 행동강령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청렴의식 고취
- 기타 반부패 청렴 추진방안

## 2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체계

### □ 개요

-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방통위 청렴 추진체계' 구축·운영



###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반부패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실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 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간사) 등으로 구성, 분기 1회 운영
  - 반부패 청렴정책,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반부패 관련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의결 및 주요 의사결정
- (청렴 추진 실무회의) 각 실·국 총괄계장, 총괄 주무관, 청렴담당 계장(간사) 등으로 구성, 분기 1회 운영
  -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청렴향상 아이디어 제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방안 실무 검토 추진
- (청렴전담팀) 운영지원과내에 청렴전담팀을 구성하여, 반부패·청렴, 공직기강, 공직윤리 및 민원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

### 3 | 중점 추진과제

#### 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및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 1)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도

###### ①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적극 동참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직무 관련 강의료 미수령 등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공기관 전반에 단계적 확산 유도

###### ② 고위공직자 청렴워크숍 실시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 및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유적지 방문, 청렴강의 등이 포함된 청렴워크숍을 실시

###### ③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연결고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직사회의 경조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위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 수범사례 예시 : 결혼식 등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 고위직의 경조사 미통지,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대회,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 ④ (가칭) 장관 행동강령 도입 추진 대응

- 최고 관리자·정책결정권자인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마련(권익위)
-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하여 외부강의 대가 수령, 이해충돌 방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행위기준 마련(권익위)

##### <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예시) >

-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 ◆ 지위·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 ◆ 소속 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 ◆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 ◆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
- ◆ 외부강의,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행동강령 적용

⇒ 권익위로부터 장관 행동강령 제정(안)이 시달될 경우 우리 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반영 등 자체 규정 개정 추진(연중)

#### 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업무 환경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부패위험요인 발굴 및 고위직 솔선수범 유도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①조직환경 부패위험도 ②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③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등 3단계로 구성
  - 평가대상 : 고위공무원 (실장·국장 4명)

⇒ 권익위의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적용하여 진단 실시(6월)

## 2)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①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 확립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여 청렴의식 확산
- 5급 승진예정자, 신규 전입자 대상으로 공직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 지속 함양

### ② 전직원 청렴결의대회 추진

- 직원조회, 워크숍, 청렴유적지 방문 등을 이용하여 전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활동을 활성화하여 소속 직원의 청렴의식 확산

### ③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실화

-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청렴활동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 위반직원에게는マイ너스 마일리지 부여
  -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상여금, 우수부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④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청렴의식 고취 활성화

-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운영
-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주요내용, 부패방지 행동사례 등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행동강령 알리미’ 코너 게시판 운영 등

### 3)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 문화 확산

#### ①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내실화

- 반부패 청렴 업무와 관련, 외부인으로 구성된 통제장치인 「청렴 옴부즈만」 제도<sup>\*</sup> 운영 내실화

- 청렴 옴부즈만에게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 등의 부패행위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운영

\*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 감사참여, 정책 관련 의견제시, 비리 제보 등

< 방통위 청렴옴부즈만(Ombudsman) 역할 및 권한 >

- ① 주요 정책(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의견 제시, 감사요구
- ② 방통위 자체감사 참여, 주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③ 청렴 취약 분야(연구·계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비리 제보
- ④ 반부패 관련 정책 검토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 등 수행

#### ② 공공,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유관단체, 방송 및 통신사업자 등이 포함된 청렴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유도

- 예산편성 및 집행,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 행사, 간담회, 자문단 등 민간단체와의 반부패 협력사업 등 적극 추진  
- 협의체 구성(7월 말), 협의체 회의 개최(8월~11월)

< 방통위 유관기관 청렴정책협의체 구성(안) >

##### ○ 협의체 구성단체

- (공직유관단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심위, 방문진, EBS
-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KBS, SBS, MBC, SK telecom, KT, LG유플러스

##### ○ 협의체 운영방식

- 분기 1회, 정부 청렴정책자료 공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

## 나.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으로 앞으로 강화될 공직자의 행동강령 및 기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1)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및 점검 강화

#### ①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현행 강의료 상한기준을 우회하여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등에 대해 '외부강의 심의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심의를 요청
- 원고료·자문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 신설을 검토

#### ②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점검

- 복무점검 중심의 공직기강 점검에서 부조리 취약분야 기획점검 병행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만남, 인사청탁, 공용물 사적사용 실태 등 기획점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
- 명절·휴가철 및 인사철 등 취약시기 도래 전 공직기강 집중 점검

#### ③ 부서별 부패행위 대상 업무 및 부패유형 설정

- 감사 지적 등이 빈발하는 고위험 부패에 대해서 사후 감사나 적발 보다는 자율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
  - 방통위 업무특성상 사업권 허가 및 조사업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특정부서의 업무별 부패유형을 설정하고, 부패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특정시기에 청렴주의보 또는 부패예고제를 발령

## 2)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및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①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의무적 고발 기준금액 상향

- 사안에 따라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 고발토록 개선 추진

### ②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한 서류 위·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에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

- 특혜채용, 근무평정서 조작, 허위 계약 등은 막대한 국고손실 초래
-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력조사 실시(국조실, 감사원, 수사기관 등)

## 다.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정책 투명성 제고

### ◆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

### ◆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 1)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

### ①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지침 제정 · 운영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 접수·처리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의무 명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고발·징계 등 벌칙 규정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 금지 등 신분보장제도 강구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징계책임 감면 등 우대 조치

##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공익신고 접수 처리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강화
  -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익신고 처리 담당자의 신고자 비밀보장 준수 철저
- 공익신고제도 관련 내부직원 대상 교육실시(외부강사 초빙)

## 2)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실장·국장까지 확대하여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 국장급 이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부내 지식포털에 게재,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
- 제한업종, 심야시간 및 주말사용, 원거리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부당집행 행위 발견시 엄중 문책

### ②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구체화

- 부패영향 평가 시 관련 통계현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의견을 도출하는 등 평가서 작성의 충실도를 개선

## 라.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 ◆ 공직자 행동강령 등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봄으로써 자율적으로 청렴한 공직자세 확립 유도
- 

### ① 행동강령 강화 및 내재화를 통한 청렴의식 고취

#### ○ 방통위 “청렴10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행동강령 생활화

- 업무수행 중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지만 즉시 실천가능하고 파급력이 큰 10가지 청렴실천 기준의 실천운동 전개

#### ○ 소속 직원 대상 김영란법 제정 내용 교육

- 방통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주요 내용 교육 실시

#### ○ 반부패·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방통위 행동강령 개정

- 취업청탁 금지,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제한, 공용재산 사적사용시 징벌적 손해배상, 협력업체와 부당거래 방지 등

### ② 기타 반부패·청렴 추진방안

#### ○ 부패 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 부패척결 및 부패행위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내에 상시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 신고기간(10월~12월) 지정 · 운영

#### ○ 청렴담당부서 직원 인사 시 사전검증 절차 운영

- 인사담당 내에 검증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추천된 자에 대한 개임 및 소속부서의 청렴검증을 실시

V

##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1 향후 추진일정

#### □ '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응

- 실시계획 확정·통보(6월),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및 확인(7~8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8~12월), 측정결과 발표(12월)

####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응

- 실시계획 확정·통보(4월),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11~12월), 평가  
결과 발표('16.1월)

#### □ '15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진단계획 수립(5월), 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6월)

### 2 행정사항

#### □ 기관별 「2015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수립·추진

- 산하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15.7.24(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후 1개월 이내 계획 수립 후 제출

#### □ 자체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 산하기관은 자체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 관리에 철저

- 우리 위원회는 산하기관의 청렴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 우리 위원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부패방지시책 추진실적 평가 실시

## 참고

## 행동강령 개정(안)

구 분	도입 내용	행동강령 관련 조항
①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li> </ul>	<p><b>&lt;신설&gt;</b>          제9조③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②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허가, 조사, 감사</u> 등의 직무를 수행 시 사적 접촉 제한</li> </ul>	<p><b>&lt;개정&gt;</b>          제3조의3공무원은 <u>허가, 조사, 감사</u>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p>
③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li> </ul>	<p><b>&lt;신설&gt;</b>          제9조④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가족이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④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은 회사 차량·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b>&lt;신설&gt;</b>          제13조② 제1항에 따라 관련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p>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b>&lt;신설&gt;</b>          제12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공무원은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참고****주요 추진일정**

구 분	내 용/대상	시 기	
<b>①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b>	훈령 등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의무화	훈령·예규 등의 업무 처리 규정개정	~ '15. 7월
<b>② 반부패 수법사례 도입</b>	상반기 도입(8건)	-	~ '15. 7월
	하반기 도입(미정)	-	~ '15. 10월
<b>③ 내외부 청렴도 개선</b>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실국장 4인	~ '15. 6월
	14년 청렴마일리지 평가	전직원	~ '15. 5월
	청렴주의보 발령	전직원	수시
	행동강령 게시판 운영	전직원	수시
	고위직 청렴워크숍	위원장, 상임위원 실국장	'15. 7월, 11월
	청렴유적지 방문 또는 청렴결의대회	전직원	'15. 11월
<b>④ 청렴정책추진단 운영</b>	반부패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개최	실장, 총괄과장	'15. 5월, 10월
	청렴 추진 실무회의	총괄 사무관·주무관	'15. 5월, 10월
	민관 청렴정책협의체 개최	공직 유관단체, 방송통신사업자	'15.7월(구성) '15.8월~11월 (운영)
<b>⑤ 청렴옴부즈만 운영</b>	관련정책 검토 분기 1회 회의 개최	청렴옴부즈만 위원	'15. 2월, 4월, 9월, 12월
<b>⑥ 김영란법 시행 대응</b>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 기준 개선	위원장, 상임위원, 실국장 등 고위직	~'15. 10월
	부패행위자 기준 강화 및 정보공개	형사고발 기준 강화 온정적 처벌관행 타파	~'15. 10월
	김영란법 제정내용 교육 실시	전직원	'15. 8월